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49
----------	-------

발의연월일 : 2026. 4. 15.

발 의 자 : 김영호 · 김문수 · 김준혁
강경숙 · 백혜련 · 고민정
백선희 · 김준환 · 진선미
황명선 · 박성준 · 백승아
의원(12인)

제안이유

초저출산 지속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이주배경학생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25년 이주배경학생 수는 202,208명으로 전체 초중등 학생의 4%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최근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이끌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사회포용, 이민정책의 국가 전략적 활용 등이 추진되면서 2024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주민 수가 우리나라 총인구의 5%인 258만명을 넘어섰고 2025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이 278만명을 돌파하며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주배경학생 중에서도 외국인가정의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이주배경학생의 초중등 학교 진입이 늘어날뿐만 아니라 공교육 진입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주배경학생의 학습 결손 누적이 심화되고 있고, 학생의 이주배경, 언어 능력 등에 따른 학습 격차가 큰 이주배경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밀집지역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한국어를 모르는 이주배경학생의 학습 결손 및 학교 부적응이 학생 개인의 문제를 넘어 모든 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확대되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주배경학생의 공교육 진입 및 초기 한국어 집중 교육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경제 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우수 외국인 인력의 국내 유입 및 등 지역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 모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환경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이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등록 관련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연계·활용하여 이주배경학생에게 학교 입학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이주배경학생 및 한국어능력 수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 수준을 진단하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해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교수학습자료·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특별학급 설치·운영, 한국어교육 위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이주배경학생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 일정 기간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바. 교육감이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한국어교육 등 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사. 교육감이 이주배경학생의 밀집도, 지역사회 특성 및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중점지원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점지원학교가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 등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아.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 등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지역사회 기관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환경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이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이주배경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4.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이주배경학생을 교

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교육 진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관련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연계·활용하여 취학 대상 이주배경학생 본인 및 보호자에게 학교 입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의 보호자가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입학에 필요한 절차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상담, 정보 제공, 입학 신

청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이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의 이주배경, 언어 수준 등을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 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학교 입학 안내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한국어능력진단검사) ①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 및 한국어능력 수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이하 “이주배경학생 등”이라 한다)의 학교 생활 적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 수준을 진단하는 검사(이하 “한국어능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이주배경학생 등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한국어능력진단검사 및 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한 상담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주배경학생 등에게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한국어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한국어능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생 등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교수학습자료·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 등의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한국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한국어능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제2항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위탁기관과 연계하여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육 실시를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학교에 배치하고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특별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 등의 한국어능력, 학교 적응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⑥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기술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 ⑦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학생의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항에 따른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 ⑧ 제2항에 따른 특별학급의 설치·운영 및 한국어교육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입학 전 한국어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 학생 등의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하여 이주배경학생 등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 일정 기간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육 결과를 학년 배정 및 학습 지원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어교육 실시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정보의 제공·활용 등) ①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한국어교육 등 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배경학생 및 그 보호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관련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한국어교육 등 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교육감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또는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한국어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원활한 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이주배경학생의 성명, 주거지, 연락처(보호자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한국어능력진단검사 결과, 한국어교육 지원의 내용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한국어교육 등 교육지원 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활용하여 한국어교육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종류와 범위, 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중점지원학교의 지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의 밀집도, 지역사회 특성 및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학교(이하 “중점지원학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점지원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 등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중점지원학교는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및 조기적응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점지원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배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중점지원학교의 지정 기준, 운영 방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연수)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 등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의 시기, 방법 등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한국어교육 등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민간단체, 관계 기관 간의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계·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 지원 및 다문화 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업무의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위탁업무 수행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기간에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교육장, 소관 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어능력 진단검사, 한국어교육 체계 구축, 지역 협력체계의 구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